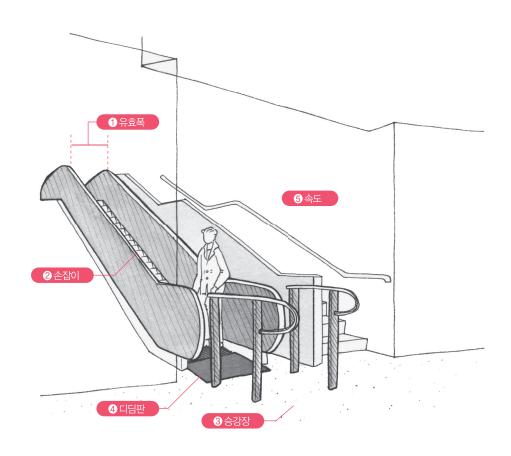
9. 에스컬레이터



■설치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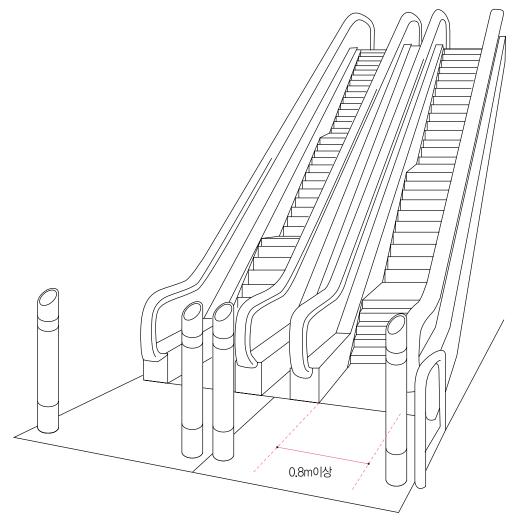
보행장애인, 시각장애인, 노인, 어린이, 임산부 등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위험이 따른다.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란, 휠체어 바퀴 고정장치 등 특수 안전장치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.

■설치요점

- 정지상태에서 휠체어를 고정시킨 후 안전장치가 확인된 후에 작동되어야 한다.
- 휠체어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동 보조인이 동승하여 운행하여야 한다.
-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인 경우에도 가까운 거리에 계단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1) 유효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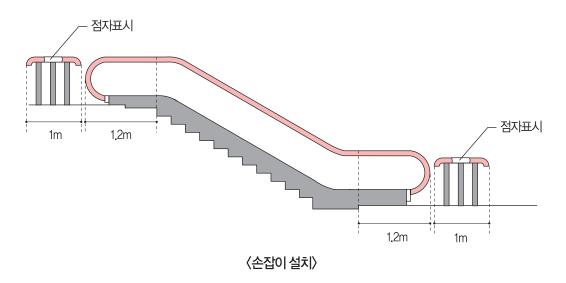
-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.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유효폭 1.2m 이상은 양측 손잡이를 잡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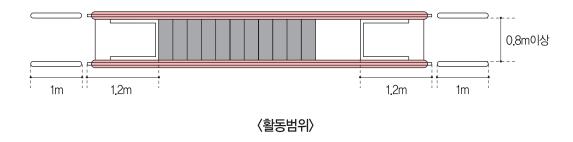


〈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〉

2) 손잡이

- 에스컬레이터 양측면에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 손잡이를 설치한다.
- 손잡이는 움켜잡기에 용이한 형태와 구조로 되어야 한다.
- 에스컬레이터 양끝 부분에는 수평 이동 손잡이를 1.2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- 시작과 끝지점에는 높이 0.85m±5cm, 길이 1m 이상의 수평 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층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.





3) 승강장

- 승강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주변 바닥마감재와는 질감, 색상 등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.
- 승강장 전면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.5m×1.5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수평 고정 손잡이가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 시작 지점 이전을 휠체어 활동공간으로 본다.

4) 디딤판

- 휠체어를 수평으로 고정시킨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을 3매 이상 또는 1.2m 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디딤판의 끝부분은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색상, 재료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

5) 속도

•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1분당 30m 이내로 하여야 한다.